

국제출원 소식지

[2018년 12월]

PCT 국제특허출원,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헤이그 국제디자인 출원의
최신 소식 등을
알려 드립니다

특허협력조약(PCT) 소식

마드리드(Madrid) 소식

헤이그(Hague) 소식



특허청 국제출원과



PCT 소식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1. PCT 동맹총회
2. 국제사무국의 팩스 사용중단 및 신규 서류 제출 서비스
3. 유보 규정의 철회
4. WPO 우선권서류 전자적 이용 서비스(DAS)
5. 주요 업데이트 정보
6. 협력심사
7. 소식지를 통한 유용한 도움말
8. 수수료 납부요청에 대한 경고(신규 사항)

1 PCT 동맹총회

□ PCT 규칙 일부 개정

- PCT 총회에서는 PCT 규칙 69.1(a)에 대한 개정안이 채택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아래 항목이 모두 수리된 경우 국제예비심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 * 국제예비심사청구서, 해당 수수료,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부작성선언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 다만,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 청구 기한까지 심사착수 연기를 요청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개정안은 2019. 7. 1.부터 적용되며, 해당일 이후 국제예비심사 청구가 이루어진 모든 출원에 적용됩니다.

2 국제사무국의 팩스 사용 중단 및 신규 서류제출 서비스

□ 팩스 사용 중단 및 새로운 업로드 서비스 개시

- 그간 공지되었던 바와 같이, WIPO 국제사무국에서는 2019년부터 팩스를 이용한 서류 접수 및 발송 서비스를 중지합니다. 아울러 현재 “컨티전시 업로드 서비스”라는 서류 제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https://pct.wipo.int/ePCTExternal/pages/UploadDocument.xhtml>
- WIPO 계정이 없더라도 출원 및 중간서류 제출 가능하며, 서류는 PDF 형태로 준비해야합니다.
- 동 서비스는 주로 국제사무국에 긴급한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가능한 ePCT 이용을 권장합니다.
- 다만, 출원인의 적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팩스 중단 예정일은 2019. 6월말로 연장합니다.

3 유보 규정의 철회

□ 터키특허청

- 지정(선택)관청으로서의 터키특허청은 우선권회복에 관한 조약 적용의 유보통지를 철회하고, 2017.1.10. 이후 관련 규정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 2017. 1. 10. 이후 국내단계에 진입한 국제출원에 대해 우선권회복 신청 건들을 검토하고, 요건 충족 시, 타 수리관청이 내린 우선권 회복 결정을 수용하게 됩니다.
 - 우선권회복 신청 적용 기준은 “적절한 주의(due care)”의 여부이며, 수수료는 1,890 터키리라(2018.12.기준 한화 약40만원)입니다.

4 WIPO 우선권서류 전자적 이용 서비스(DAS)

□ DAS 안내 및 이용가능 국가 현황

- PCT 출원인은 WIPO 우선권서류 전자적 이용 서비스(DAS)를 통해 국제사무국에 선출원 사본을 DAS에서 조회하여 우선권 서류로 사용하도록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직접 인증사본을 제출하거나 제출할 준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DAS 활용을 위해서는 선출원이 출원된 관청이 DAS 기탁관청이어야 하지만, 국제출원이 출원된 수리관청은 DAS 기탁관청이 아니어도 됩니다.
 - * 한국특허청에 선출원된 경우 이용 가능
- DAS 참여관청은 호주, 중국, EPO, 일본, 한국, 미국 등 20개 관청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https://www.wipo.int/das/en/participating_offices.html

5 주요 업데이트 정보

□ 중국

- 중국 특허청(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SIPO)의 영문 관청명 및 인터넷 주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관청명: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PRC (CNIPA)
 - 인터넷 주소: <http://www.cnipa.gov.cn/>

□ 룩셈부르크(국내진입 번역문 요건)

- 룩셈부르크에서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프랑스어나 독일어 외 다른 언어로 된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프랑스어나 독일어 번역 외에 영어 번역도 허용한다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 다만, 출원이 영어로 제출되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의 독일어 또는 프랑스어 번역문도 함께 제출 필요합니다.

□ 수수료 및 납부 관련 요약(WIPO내 한국어 제공 사이트)

- 국제단계에서 납부하는 PCT 수수료의 종류, 금액, 납부처, 납부 방법 및 후속 조치에 관한 내용이 웹페이지 한 곳에 일괄적으로 업데이트 및 정리되어 PCT 공개언어 10개 모두로 제공 중이며, 한국어 사이트 이용이 가능합니다.

* <https://www.wipo.int/pct/ko/fees/index.html>

□ 2019년 WIPO 국제사무국 휴무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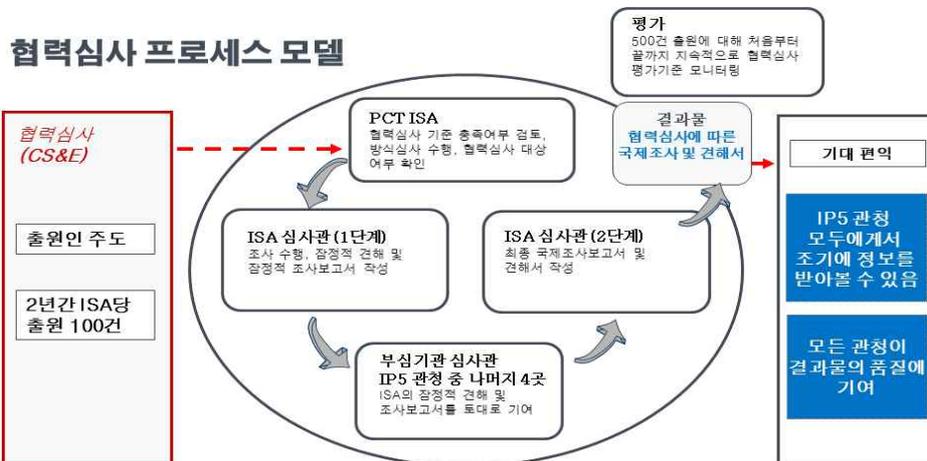
- 모든 토요일, 일요일 및 아래 일자는 WIPO 국제사무국은 휴무일입니다. 국제공개 및 각종 신청 등 절차 진행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1/ 4.19/ 4.22/ 5.30/ 6.10/ 9.5/ 9.25/ 12.25/ 12.31

6

협력심사

□ IP5 관청에 의한 시범사업 프로젝트

- IP5 관청들은 2018년 7월 1일 협력심사(Collaborative Search and Examination, CS&E) 시범사업 프로젝트를 발족했습니다.
 - PCT에 따른 국제조사에 협력적 접근 방식을 시험적으로 적용합니다.
-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원인의 선택에 따른 진행이며,
 - 모든 협력 국제조사기관들이 개개의 협력심사 작업 결과물 생성에 기여합니다. 2년의 기간 동안, "주심기관(main ISA, 주 ISA)"의 역할에 따라 약100건의 국제출원을, "부심기관 (peer ISA, 부 ISA)" 역할에 따라 약 400건의 국제출원을 처리하게 됩니다.
 - 모든 협력 ISA가 공통의 품질 및 작업 기준 적용됩니다.
- 최종 보고서 및 견해서는 주심기관이 작성하며, 부심기관들의 견해를 참작하되 의견 차이를 인용하거나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 * 부심기관들이 제시한 견해는 출원인이 ePCT를 통해 확인가능하고, ISR이 공개되면 PATENTSCOPE에서 확인가능
 - 출원인의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며, 영어 출원만 이용가능 합니다.
 -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출원인별 10건으로 제한됩니다.



7 소식지를 통한 유용한 도움말

□ 국제사무국에 대한 문서 제출(문서 업로드 기능)

- ePCT에 친숙하지 않고 기한도 촉박한 경우, 대신 ePCT 내 문서 업로드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ePCT 홈페이지(<https://pct.wipo.int>) 내 "WIPO 계정 만들기(Create WIPO account)" 링크를 클릭해서 필요 정보를 작성하고 계정 인증이 필요합니다.
- 검색란에 PCT 출원번호 및 국제출원일을 입력하고, 일치 시 "문서 업로드(upload documents)"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해당 실행 기능이 열립니다. 그러면 아래의 간단한 단계를 거치면 됩니다.
 - "문서 유형(Document type)"에서 문서 유형 선택하고, "문서 추가(Add document)" 버튼을 클릭해 문서를 찾아 첨부합니다.
 - 필요시, 비공식적 메시지란(선택)에 입력할 수 있으며, 자격을 갖춘 서명인의 서명을 한 후 "업로드(Upload)"를 클릭하고 첨부문서를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8 수수료 납부요청에 대한 경고(신규 사항)

□ 새로이 확인된 수수료 납부요청 주의 대상

- PCT 국제출원의 처리와 무관한 수수료 납부 요청을 받은 기존 사례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부당한 수수료 납부 요청 대상이 파악되었습니다. 아래 대상자로부터 받은 통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IPTA - International Patent and Trademark Agency"
 - "WPTR - World Patent and Trademark Register"

마드리드(Madrid) 소식

MADRID

1. 회원국 및 선언사항 변경
2. 마드리드 공통규칙 개정
3. WIPO 사용자 인증절차 개선
4. 기타 사항

1 회원국 및 선언사항 변경

□ 멕시코특허청(IMPI)의 사용의사선언 - 2018. 8. 10. 발효

- 멕시코를 지정한 국제등록 권리자는 IMPI에 상표에 관한 사용의사선언서(Declaration of Actual and Effective Use)를 직접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IMPI 직권으로 해당 상표의 취소를 선언할 것입니다.
 - * 현지 법률대리인 또는 현지 주소가 있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해당 선언서에 관련 지정상품을 표시하고, 수수료 납부내역도 제출해야 합니다. (단, 상표의 사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 마드리드 공통규칙 Rule 18ter(1) 또는 18ter(2) 관련한 IMPI의 선언에 따라, 2018. 8. 10.부터 등록되는 모든 국내상표 및 국제등록상표에 대해
 - 멕시코 국내등록결정일로부터 3년에 도달하는 해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의사선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마드리드 국제등록 갱신의 경우 갱신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

□ 말라위(Malawi) - '18. 12. 25. 발효 예정

- 102번째 마드리드 프로토콜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 선언사항으로는
 - Article 5(2)(b), 5(2)(c)에 따라 가거절통지 기한은 국제사무국의 통지일로부터 18개월이며, 이후 이의신청에 의한 가거절통지도 가능하고,
 - Rule 7(2)에 따라, 국제출원 또는 사후지정 시, 상표에 대한 사용 선언이 요구되며,
 - Rule 20bis(6)(b)에 따라, 국제등록부 상의 라이선스는 말라위에서 효력이 없으므로 말라위 국내등록부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사모아(Samoa) – 2019. 3. 4. 발효 예정

- 103번째 마드리드 프로토콜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 선언사항으로는
 - Articles 5(2)(b), 5(2)(c)에 따라 가거절통지 기한 18개월 및 이후 이의신청에 의한 가거절통지 가능하고,
 - Article 8(7)에 따른 개별수수료를 부과하며,
 - Rule 20bis(6)(b)에 따라 라이선스 관련한 국제등록부 등재 내용은 사모아 국내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 회원국 현황은 <https://www.wipo.int/madrid/en/members/> 에서,
국내절차는 <https://www.wipo.int/madrid/memberprofiles/#/> 참조

□ 니스분류 11판 2019 버전 시행 – 2019. 1. 1. 시행 예정

- '19. 1. 1. 부터 본국관청을 통해 접수되는 국제출원서에 적용됩니다.
 - Article 3(4)에 따라 본국관청으로부터 2개월을 경과하여 국제 사무국에 접수되어 국제출원일이 '19.1.1일 이후가 되는 출원도 포함되나,
 - '18. 12. 31. 이후 갱신, 사후지정 및 기타 변경 건은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 11판 2019버전에 따라 분류되는 국제등록에 대해, 지정계약당사자에 보내는 통지서, 등록인증사본 및 공개사본의 지정상품/서비스 목록 옆에 'NCL(11-2019)'를 표시하고,
- MGS(Madrid Goods and Services Manager)도 2019버전 도입에 따른 변경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 관련 정보는 <https://www.wipo.int/classifications/nice/en>에서 제공됩니다.

2 마드리드 공통규칙 개정 - '19. 2. 1. 발효 예정

<< 관련 규정 >>

- 국제등록의 분할 - Rule 27bis 및 수수료(Schedule of Fees) 7.7 신설
- 국제등록의 병합 - Rule 27ter 신설, Rule 27(3) 삭제
- 기초출원 효력소멸에 따른 분할 국제등록의 취소 - Rule 22(2)(b) 개정
- 신설된 27bis, 27ter 수용여부에 관한 선언 - Rule 40(6) 신설
- WIPO 공보에 공개 - Rule 32 개정

☞ https://www.wipo.int/edocs/madrdocs/en/2018/madrid_2018_21.pdf 참조

□ 국제등록의 분할 - Rule 27bis 및 Schedule of Fees 7.7 신설

- 국제등록 권리자는 특정 지정계약당사자에 대해 지정상품(서비스) 별로 국제등록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할신청은 공식서식(MM22)으로 작성하여 해당 지정계약당사자를 경유하여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며, 수수료 177 CHF가 부과됩니다.
 - * Schedule of Fees, 7.7 참조
- 해당 지정계약당사자는 1)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기 전에 국내/지역의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고, 이때 별도의 수수료도 부과할 수 있으며, 2) 신청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서비스)와 관련해 공통규칙 Rule 18bis에 따른 중간보고서(a statement of interim status of the mark) 또는 Rule 18ter에 따른 등록결정서(a statement of grant of protection)를 함께 송부할 수 있습니다.
- 국제사무국은 해당 분할신청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고 요건 충족 시 국제등록부에 상기 중간보고서/등록결정서와 함께 등재하고 분할 국제등록부를 생성, 이를 해당 지정계약당사자 및 권리자에 통보합니다.
 -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하자통지서를 발송하고 이에 권리자는 3개월 이내에 하자를 치유해야 하며, 기간 내에 치유하지 않은 경우 포기로 간주하며, 수수료 금액의 50%를 차감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 국제등록의 병합 - Rule 27ter 신설

- Rule 27(3)이 삭제되고 Rule 27ter을 신설하여 국제등록의 병합에 관련된 모든 규정이 통합됩니다.
- Rule 27ter(1) : 일부 명의변경으로 인한 국제등록의 병합
 - 병합신청은 국제사무국에 직접 또는 권리자의 계약당사자를 통해 공식서식(MM 23)으로 제출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 Rule 27ter(2) : 분할된 국제등록의 병합
 - 분할된 국제등록은 분할이전의 原국제등록과만 병합이 가능하며, 병합신청은 분할신청을 제출한 관청을 통해서 관련서식 (MM24)으로 제출(국제사무국에 직접제출은 불가)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 등재 및 통지 : 국제사무국은 Rule 27ter(1) 또는 27ter(2)의 요건을 충족한 병합신청에 대해 관련 정보를 등재하고 그 등재로 영향을 받는 계약당사자와 권리자 및 해당되는 경우 그 신청을 제출한 관청에도 이를 통보할 것입니다.

□ 기초표장의 효력소멸에 따른 분할 국제등록의 취소 - Rule 22(2)(b)개정

- 기초표장의 효력소멸에 따라, 본국관청의 요청으로 원국제등록이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된 경우, 분할된 국제등록도 그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설 Rules 27bis, 27ter 및 40(6)에 따른 가능한 통지

- Rule 27bis(1) : 계약당사자가 국제등록의 분할신청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선언
 - Rule 27bis(6)에 따라, 출원 또는 등록의 분할을 허용하지 않는 계약당사자는 Rule 27bis의 발효 이전 또는 마드리드 프로토콜에 예속되기 전에 국제사무국에 분할신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 Rule 27ter(2)(a) : 분할된 국제등록의 병합신청을 접수하지 않겠다는 선언
 - Rule 27ter(2)(b)에 따라, 등록표장의 병합을 허용하지 않는 계약 당사자는 Rule 27ter의 발효 이전에 또는 마드리드 프로토콜에 예속되기 전에 국제사무국에 분할된 국제등록의 병합신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 Rule 40(6) 신설 : Rules 27bis(1) 및 27ter(2)(a)와 계약당사자의 국내/지역 법령 간의 상호대립에 대한 통지
 - 계약당사자는 27bis(1) 및 27ter(2)(a)이 발효 이전, 혹은 마드리드 프로토콜 가입 이전에 WIPO 사무총장에 해당 규칙이 자국의 국내·지역 법령과 상호 양립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 ☞ Rules 27bis(6), 27ter(2)(b), 40(6)에 따른 선언을 통보한 계약당사자에 대해서는 해당 신청이 불가하나, 선언 또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철회 시 해당 관청에 대해 분할·병합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제상표에 대한 WIPO 공보에 공개 – Rule 32 개정

- 국제사무국은 Rule 27bis에 따른 분할과 Rule 27ter에 따른 병합을 국제상표공보에 공개하고, Rules 27bis(6), 27ter(2)(b) 또는 40(6)에 따른 통지(서)를 WIPO공보에 공개할 것입니다.

<< Rule 27bis, 27ter 관련 각 청의 입장 >>

- 호주, 터키, 마다가스카르, 콜롬비아, 일본은 Rule 27bis(1)에 따른 분할신청 및 27ter(2)(b)에 따른 병합신청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하였습니다.
- 우리청도 즉시 도입은 불가하므로, '19.1월에 WIPO측에 유보선언을 통지할 예정이며, 향후 법제도, 심사, 시스템 운영 측면에서 분석 및 파급효과를 검토한 후 필요 시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3 WIPO 사용자 인증 절차 개선

□ 새로운 WIPO 인증절차 예정

- '19년 부터, 개인정보, IP 등록서비스 및 수수료 시스템 사용에 대한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WIPO 사용자계정(User Account - ID/Password)이 필요합니다.
- 마드리드 시스템 관련해서는 e-Renewal, e-Subsequent Designation 이용 시, WIPO 사용자계정이 요구됩니다.
- ☞ 계정에 관한 세부내용은 <https://www3.wipo.int/myaccount/en/>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사항

□ 개별 수수료 변동 - 국내 수수료 및 환율 변동에 근거

- 모로코('18. 7. 13.), 터키('18. 11. 19.), 대한민국('18. 9. 7.), OAPI('18. 9. 9.), 멕시코('18. 11. 8.), 베네룩스('19. 1. 1. 예정), 콜롬비아('19.1.1. 예정)
- ☞ 수수료 현황은 아래 WIPO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wipo.int/madrid/en/fees/ind_taxes.html

□ 법령 및 시스템 등 변동 사항

- 중국특허청의 마드리드 전자출원시스템 개통
 - 출원서 작성 및 제출, 통지서 접수 및 열람, 하자보정 및 수수료 납부 (위안화로 중국특허청에 납부하면 중국특허청에서 WIPO로 송금)기능이 있습니다.
 - 개통 당월에 358건(전체 출원의 52%)의 마드리드출원 접수되었습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아래 WIPO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wipo.int/madrid/en/news/2018/news_0012.html

○ 그리스 - 공통규칙 Rule 20bis(6)(b) 관련 선언 철회

- '18. 10. 25. 부터 그리스에서 등록된 라이선스에 대한 국제등록부의 등재 내용은 그리스의 국내등록부에 직접 등록된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

○ 그루지아 - Madrid E-Filing 개시

- '18. 11. 12, 그루지아 지식재산센터(Sakpatenti)는 베네룩스 및 호주 특허청에 이어 세 번째 Madrid e-filing 서비스 가입관청이 되어,
- 그루지아의 상표권리자는 Madrid e-filing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관련 상표의 보호·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Madrid e-filing이란?** WIPO에서 개발한 마드리드 국제출원 인터페이스로, 2개의 모듈(사용자 모듈과 본국관청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원인의 MM2 작성(이때 본국관청의 기초상표 데이터 활용 가능), 본국관청이 MM2를 국제사무국에 전자전송, 본국관청-국제사무국 간의 하자 통지·보정 관련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WIPO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wipo.int/madrid/en/contracting_parties/efiling_info.html#what

헤이그(Hague) 소식

HAGUE

1. 국제사무국 단계 대리인 선임요건 완화
2. 국제사무국의 새로운 전자출원 시스템
3. DM/1(국제출원서) 서식개정
4. 헤이그협정 체약국 변경사항
5. 자주 문의하는 사항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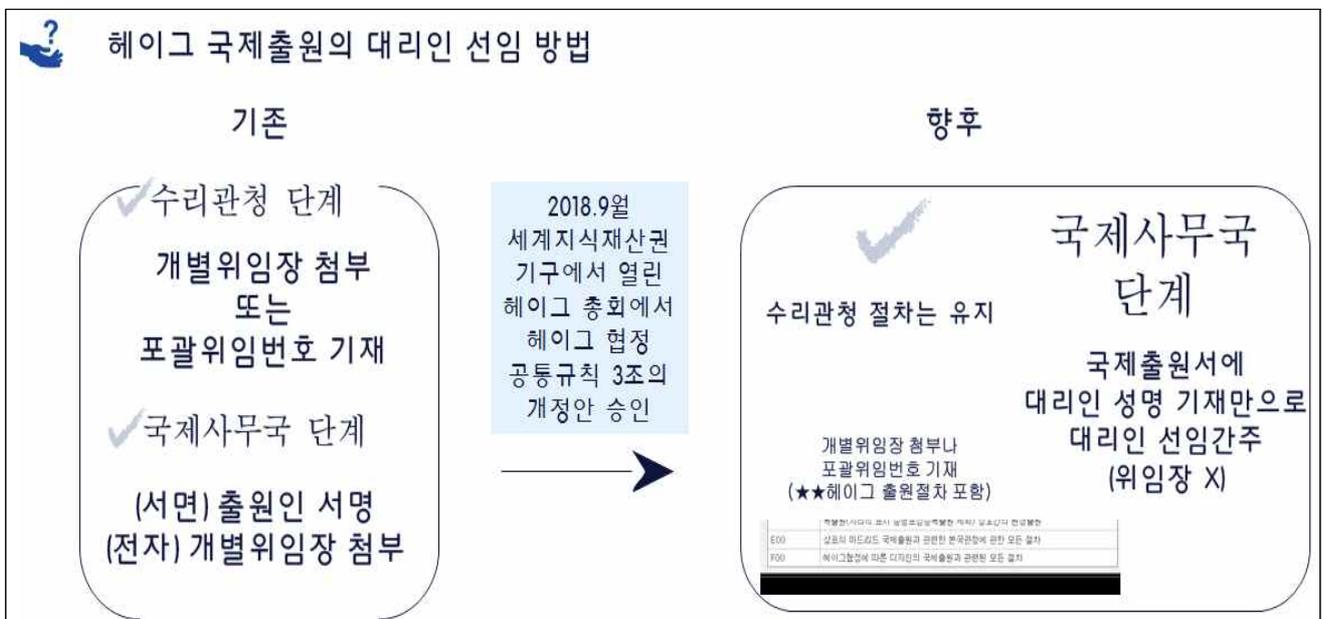
헤이그 국제출원의 대리인 선임요건 완화

□ 헤이그 국제디자인 출원을 대리인 선임요건

- 그동안 헤이그 국제출원을 위해서는 수리관청 단계 대리를 위한 위임장과 국제사무국 단계 위임장 두 가지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 특허청을 통한 간접출원의 경우이며, 국제사무국에 직접출원을 하는 경우 후지만 제출

□ 국제사무국 단계 대리인 선임 요건 완화

- 국제사무국 단계 대리를 위해서 반드시 출원서에 출원인이 서명을 하거나 위임장을 제출해야했던 기존 요건이 2019.1.1.부터 변경되어 대리인 정보의 기재만으로 대리인 선임이 가능합니다.
- 국제사무국 단계 위임장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유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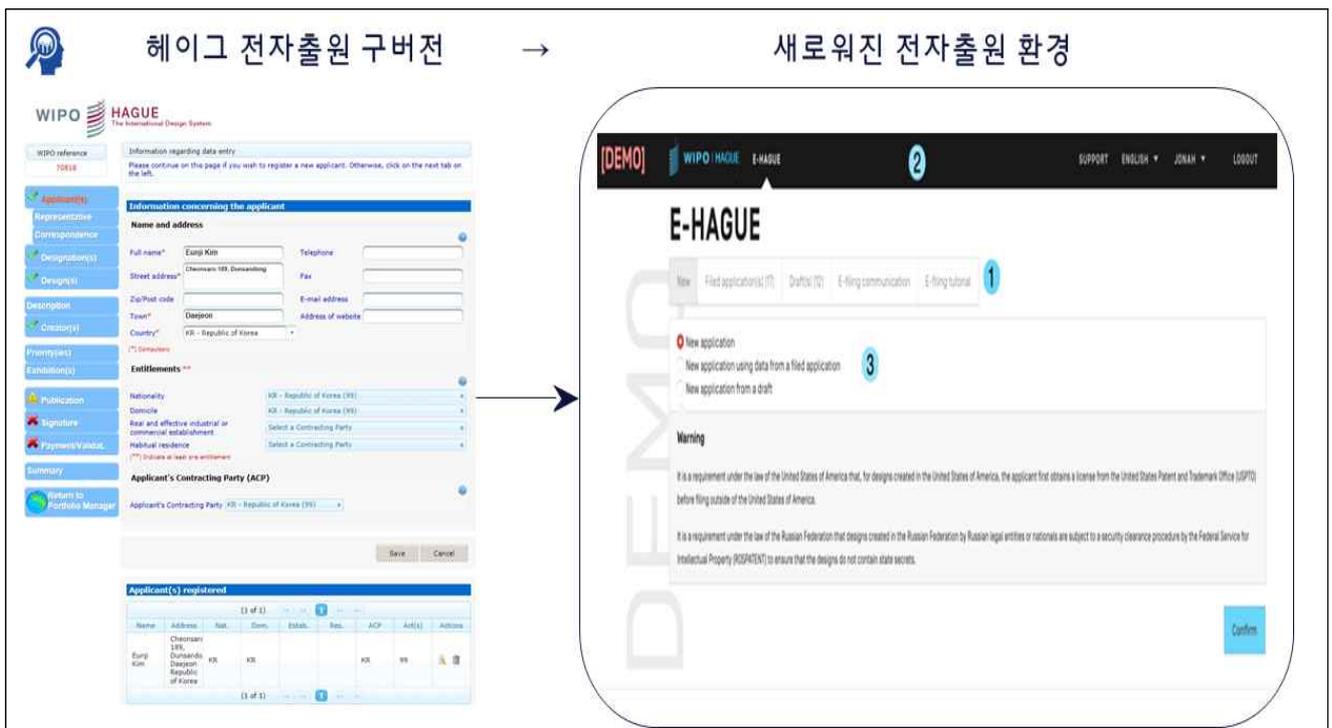
- 특허청을 통한 간접출원의 경우 특허청 수리관청 단계 위임장은 기존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제출원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대리인 선임이 아닌 국제출원 후 별도 신고를 통한 대리인 선임의 경우 출원인 서명이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국제사무국의 새로운 전자출원 시스템

□ 새로운 헤이그 전자출원 시스템 소개

- 국제사무국에서는 2018.11.20. e-PCT를 모델로 한 새로운 전자출원 인터페이스를 공개하였습니다.
 - 화면구성이 보다 단순하고 가시성이 높으며, 하나의 화면에서 모든 항목이 접근 가능하도록 편리하게 개선되었습니다.



□ 수수료 납부 방법의 다양화

- 화면구성의 변경 외에도 편리한 수수료 납부방법(Paypal*)을 추가 도입 하였으므로 출원인은 은행송금, 신용카드, WIPO 당좌계좌, Paypal 중 원하는 송금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페이팔 (Paypal) :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온라인 전자 결제 시스템으로 결제에 사용할 신용카드로 본인을 인증하고 이메일 계정을 만들면 결제시마다 이메일 계정과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돼 절차가 간편

□ 새로운 전자출원 시스템 안내 정보

- 전자출원 데모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https://www.wipo.int/hague/en/how_to/efiling_tutorial/demo.html

3

DM/1(국제출원서) 서식개정

□ 주요 변경사항

- 출원인 정보의 기재사항 세분화(자연인, 법인)와 공통규칙 3조의 개정에 따른 대리인 정보 기재사항 삭제·수정이 주요내용입니다.
 - 개정된 DM/1 서식은 2019.1.1.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 출원인 정보(DM/1서식의 1번 항목)

- 기존에 출원인 기재항목이 자연인/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되어있던 사항을 별도 구분하여 체크 후 기재합니다.
 - 자연인의 경우 성과 이름까지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1 APPLICANT (mandatory)¹

(a) Applicant is a (check only one box):¹

Natural person – Family name: Given name:

Legal entity – Official designation:

(b) Address:

Postal code: City: Country:

(c) Telephone: E-mail address:

□ 대리인 정보(DM/1서식의 5번 항목)

- 의무기재 사항이었던 (C)체크항목이 삭제되었고, 위임장 첨부는 선택 사항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5 APPOINTMENT OF A REPRESENTATIVE (if any)¹

The person identified below is hereby appointed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applicant.¹

(a) Representative is a (check the appropriate box):¹

Natural person – Family name: Given name:

Legal entity – Official designation:

(b) Address:

Postal code: City: Country:

Telephone: E-mail address:

(c) To appoint a representative, the present international application must either be signed by the applicant or be accompanied by a power of attorney (check the appropriate box):¹

item 10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is signed by the applicant.¹

a power of attorney is attached to the present form (optional).¹

¹ Only one box should be checked. If both boxes are checked, the name of the representative will be recorded with the name of the natural person preceding the name of the legal entity.

4

새로운 헤이그시스템 가입국 안내

□ '18년 하반기 신규가입국 안내

- 캐나다와 베네룩스, 산마리노와 벨리즈가 '99년 협정의 새로운 당사자로 가입하였습니다.
 - 헤이그 협정의 가입효력 발효일자는, 캐나다('18.11.5)와 베네룩스('18.12.8), 산마리노('19.1.26)와 벨리즈('19.2.9)로, 이날부터 출원인은 해당 계약당사자를 지정하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

□ 신규 계약국의 특별 선언사항

관련 규정과 내용		캐나다	베네룩스	산마리노	벨리즈
Article 4(1)	수리관청을 통한 간접 출원	불가	불가	불가	불가
Article 7(2)	개별지정 수수료 선언	선언	-	-	-
Article 11(1)	공개연기의 제한	-	12개월	-	12개월
Article 17(3)	지정계약 당사자에서 보호기간	15년 (국내 등록 일로부터 10년)	25년	25년	15년
Rule 18(1)	가거절통지 기한	12개월로 대체	-	-	-

□ 헤이그협정 가입 계약당사자 현황

○ 상기 4개 계약국 가입으로 전체 헤이그 협정 가입국은 70개, 1999년 개정협정에 가입한 계약당사자는 2018년 12월 기준 60개입니다.

국가코드	국가명	국가코드	국가명
AL	알바니아(Albania)	KR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AM	아르메니아(Armenia)	LI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AZ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LT	리투아니아(Lithuania)
BA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Bosnia and Herzegovina)	LV	라트비아(Latvia)
BG	불가리아(Bulgaria)	MC	모나코(Monaco)
BN	브루나이(Brunei Darussalam)	MD	몰도바(Republic of Moldova)
BW	보츠와나(Botswana)	ME	몬테네그로(Montenegro)
BX	베네룩스(Benelux)	MK	마케도니아
BZ	벨리즈(Belize)	MN	몽골(Mongolia)
CA	캐나다(Canada)	NA	나미비아(Namibia)
CH	스위스(Switzerland)	NO	노르웨이(Norway)
DE	독일(Germany)	OA	아프리카 지식재산권기구 (OAPI)
DK	덴마크(Denmark)	OM	오만(Oman)
EE	에스토니아(Estonia)	PL	폴란드(Poland)
EG	이집트(Egypt)	RO	루마니아(Romania)
EM	유럽연합(European Union)	RS	세르비아(Serbia)
ES	스페인(Spain)	RU	러시아(Russia)
FI	핀란드(Finland)	RW	르완다(Rwanda)
FR	프랑스(France)	SM	산마리노(San Marino)
GB	영국(United Kingdom)	SG	싱가폴(Singapore)
GE	조지아(Georgia)	SI	슬로베니아(Slovenia)
GH	가나(Ghana)	ST	상투메프린스(Sao Tome and Principe)
HR	크로아티아(Croatia)	SY	시리아(Syrian Arab Republic)
HU	헝가리(Hungary)	TJ	타지키스탄(Tajikistan)
IS	아이슬란드(Iceland)	TM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
JP	일본(Japan)	TN	튀니지(Tunisia)
KG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TR	터키(Turkey)
KH	캄보디아(Cambodia)	UA	우크라이나(Ukraine)
KP	북한(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S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 베네룩스(BOIP) 지정은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를 포함
- 유럽연합(EM), 아프리카지식재산권기구(OAPI) 지정은 각 28개, 17개 국가를 포함

5 자주 문의하는 사항

□ 국제사무국 하자통지 대응방법

- 헤이그 국제출원을 이후, 하자통지를 받을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을 수리관청과는 관계없이 출원인-국제사무국 간 직접해야하는 관계로 대응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 WIPO에 직접출원을 한 경우 E-filing Portfolio Manager를 통한 대응이 시스템 내에서 바로 가능하며
- 특허청을 통해 간접출원을 한 경우는 WIPO 사이트나, 개별 접촉(우편이나 e-메일)을 통한 회신 방법이 있습니다.

 하자보정의 경로

WIPO 직접출원의 경우

E filing-communications



×

KIPO 간접출원의 경우

- Contact Hague
<https://www3.wipo.int/contact/en/hague/>
- 단, 파일첨부 기능이 없어 간단한 txt보정일 경우만 이용
- 대표 e-메일
Intdesigns@wipo.int
- 단, 보안상 문제로 권장하지 않으며, Contact Hague의 파일첨부 기능 개발 시 폐쇄 예정
- 우편
Hague Registry, Brands & Designs Sector,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34, chemin des Colombettes
1211 Geneva 20, Switzerland

★ 팩스를 통한 서류송부는 '19.1월 전면중단

□ 국제사무국 수수료 환불요청 방법

-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 수수료 납부 이후, 수수료 환불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불요청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 이는 환불사이트(<https://www3.wipo.int/finance/en/refund.jsp>)를 통해 관련 Request를 접수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 * 최초 납부한 명의인에 한해 환불요청이 가능